

여러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연간 천오백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 된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을 강행 할 능력이 있고, 개인의 경우 제소를 할 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으로 인한 타격이 클 수 있다. 소가가 낮은 소송이라도 소송 비용이 몇 만불 이상 상회할 수 있으며 종결 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첫 칼럼으로는 본인 혹은 사업을 가장 흔한 법률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S-주식회사(S-Corporation)의 설립 절차는 대체로 간단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 이러한 회사는 도관(pass through)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국세청(IRS)는 회사의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나 S-주식회사 등 법인 설립의 가장 유리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법인 상대의 소송에서 승소한 상대방 등 법인의 채권자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를 올바르게 설립하고 유지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회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법인화 되지 않은 개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업주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주택까지 잃게 할 수도 있다.

둘째, 사업 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있다. 구두로 진행 된 거래에서 양사가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더라도 오해로 인해 추후 분쟁이 발생 할 여지가 많다. 많은 사업가들이 변호사가 관여할 경우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지거나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경우 대다수의 흔한 계약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Purchase Order, Invoices, Bill of Sales, 매매계약서 등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 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한 개의 소송을 방어 하는 비용으로 수십 개, 혹은 많게는 수백 개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큰 분쟁을 예방 할 경우, 사업의 존폐는 계약서 하나에 달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 정하는 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방인권법 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며, 평등급여법(Equal Pay Act)는 남녀 간 임금 차별을 금하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40 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 해당 고용주는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과 특정 장애를 가진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 해야 한다. 또 사업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당 주 혹은 지방자치법을 준수 의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위 법률 위반 클레임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경미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근로법 위반 관련 배상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배상분은 월등하게 높을 수 있다. 그렇기에 고용, 평가, 승진, 해고 등 관련 회사 내규 및 정책을 설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법률에 대한 추가정보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적절한 내규 및 정책을 설립관련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 * * *

독자로부터 법률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에게 법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ask.koreatimes@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리차드 드위스 변호사와 배여울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알라배마 주 몽고메리 소재 법무법인 DeWeese & Bae LLC 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칼럼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